

FR-001-01

## 광주과학기술원법

[제 정	1993. 08. 05.	법률	제4580호]
[1차 개정	2001. 01. 16.	법률	제6351호]
[2차 개정	2001. 01. 29.	법률	제6400호]
[3차 개정	2008. 02. 29.	법률	제8852호]
[4차 개정	2008. 06. 13.	법률	제9107호]
[5차 개정	2010. 01. 25.	법률	제9937호]
[6차 개정	2011. 07. 21.	법률	제10866호]
[7차 개정	2013. 03. 23.	법률	제11677호]
[8차 개정	2014. 10. 15.	법률	제12757호]
[9차 개정	2014. 11. 19.	법률	제12844호]
[10차개정	2017. 07. 26.	법률	제14839호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·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조(법인)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광주과기원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3조(설립) 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4조(정관) 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9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3.3.23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5조(임원) 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,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(選任)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3.3.23., 2017.7.26.>

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. <개정 2013.3.23.>

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(監査)한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6조(이사회) ① 광주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7조(총장) 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.

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3.3.23., 2017.7.26.>

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8조(출연금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·건설·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9조(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) 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·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9조의2(수익사업)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·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0.1.25.]

제10조(사업연도) 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②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1.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
2.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
3.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2조(지원 · 조정 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 · 육성하며, 그 업무를 조정 · 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3조(학위과정 등) ① 광주과기원에 박사 · 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· 학기 · 수업일수 · 학과(學科) · 전공 및 교과(教科)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,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제1항의 박사 · 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, 교원의 자격,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4조(교원 및 연구원) 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 · 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,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7.21.>

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(研究員)을 둔다.

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5조(교원의 임면)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6조(학위수여)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 · 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7조(학생) 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 ·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,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 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8조(국제교류의 촉진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(修學)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 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19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·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
2. 기금운용 수익금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

2. 대규모 교육·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

3.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0조(기부 등)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토지·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1조(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)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 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·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·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 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2조(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 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3조(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)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·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·기기 등

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4조(동일 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5조(비밀업수의 의무)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6조(「민법」의 준용)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7조(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8조(별칙)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10.15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제29조(과태료)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7.26.>

[전문개정 2010.1.25.]

#### 부칙 <제4580호, 1993.8.5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장이 본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이전에 광주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제3조 (설립준비)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위촉하여 광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설립위원회는 광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설립당시의 광주과기원의 이사·감사 및 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.

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351호, 2001.1.16.>  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00호, 2001.1.29.〉 (정부조직법)  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 
제2조 생략  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58>생략  
<59>광주과학기술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 후단, 제5조제2항 후단, 제7조제3항 후단, 제11조제1항 후단 · 제2항 후단, 제13조제2항 · 제3항 후단 및 제17조중 “교육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  
<60>내지 <79>생략  
제4조 생략

부칙 <제8852호, 2008.2.29.〉 (정부조직법)  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. . . <생략> . . .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  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21> 까지 생략  
<122>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② 광주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  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 
② 광주과기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 · 세출결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
제12조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  
제13조제2항 중 “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.  
제17조 중 “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”을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  
제18조, 제21조제1항 본문 · 제2항 및 제22조 중 “과학기술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과학기술부장관”으로 한다.

<123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9107호, 2008.6.13.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937호, 2010.1.25.>

①(시행일)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원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.

부칙 <제10866호, 2011.7.21.> (고등교육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교수 · 부교수 · 조교수 및 전임강사”를 “교수 · 부교수 및 조교수”로 한다.

③부터 ⑦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 <제11677호, 2013.3.23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757호, 2014.10.15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844호, 2014.11.19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”을 각각 “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⑭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4839호, 2017.7.26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26>까지 생략

<327>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· 제3항, 제5조제2항 · 제3항, 제7조제3항 · 제4항, 제1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12조, 제13조제2항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제1항 본문, 같은 조 제2항,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중 “미래창조과학부장관”을 각각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미래창조과학부령”을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”으로 한다.

<328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